

# 사본

## 학교법인 만경학원 이사회 회의록 (2020년도 제 3회)

|                               |          |             |
|-------------------------------|----------|-------------|
| 1. 일 시 : 2020년 6월 23일 10시 30분 | 회의소집통보일시 | 2020. 6. 9. |
| 2. 장 소 : 만경고등학교내 법인실          | 이사정수 8명  | 재적이사 8명     |

3. 참석이사 : 6명 (이사장 남궁숙

이 사 박영창, 이상우, 박달심, 송재득, 정희철)

4. 불참이사 : 2명

5. 제적이사 : 0명

6. 안 건 : 가. 2020학년도 제2회 만경중 학교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나.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및 토지) 처분의 건

### 회 의 전 말

간사(고행정실장) : 이사정원 8명 중 6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 ◆이사장 개회 선언

이사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3회 만경학원 이사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전회의록 낭독 인준

간 사 : 2020학년도 제2회 이사회 안건인 2019학년도 법인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 2019학년도 만경중 학교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 2019학년도 만경고 학교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의 건, 2020학년도 제1회 만경중 학교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2020학년도 제1회 만경고 학교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정관 변경의 건, 법인 임원(일반이사) 선임의 건, 일반직 근속승진의 건,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안내 및 교육의 건은 2020년 4월 21일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 ◆2020학년도 제2회 만경중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 장 : 간사는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간 사 : 먼저 세입의 이전수입 중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은 8,744,000원이 증액되어 2,007,52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에서는 인적자원운용 9,000원이 증액되어 908,373,000원, 학생복지교육격차해소

7,769,000원이 증액하여 50,003,000원, 기본적교육활동 300,000원이 증액하여 47,438,000원, 교육활동지원 3,120,000원이 증액하여 94,392,000원, 학교일반운영 2,454,000원이 감액하여 92,260,000원으로 세입세출 각각 8,744,000원이 증액된 2,046,61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세입의 방과후학교활동비지원금에 편성된 코로나19 방역활동비는 목적사업비 교부금으로 목적사업비보조금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김제교육지원청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긴급 지원 사업비로 해당 사업비가 방과후학교활동비에서 지원되어 해당 원가통계비목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창 : 간사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예산안에 별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합니다.

정희철 : 동의에 재정합니다.

박달심 : 이의 없습니다.

의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2020학년도 만경중학교 제2회 학교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세출 각각 8,744,000원이 증액된 2,046,616,000원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④ 107-617-072-124-067

####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및 토지) 처분의 건

의장 : 간사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5항의 7에 의거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이를 관할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본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김제시 요촌동 158-1번지 토지 및 건물이 김제시에서 주관하는 김제시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광장조성)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보상협의 요청(김제시 도시재생과-13252, 2020.6.3.)을 해온 바, 해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처분 건을 심의하여야 합니다.

현재 김제시 요촌동 158-1번지 토지 및 건물은 본 법인 지분이 25%, 박상태, 박상준 지분이 75%인 공유지분 물건으로 건물의 경우 1983년에 준공되어 37년된 노후 건축물로 격년에 실시하는 건축물 정기안전점검결과 지반이 내려앉아 건축물의 균열 및 기울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분은 임대계약을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고 노후되어 장기적으로 수입발생 금액보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지출 경비가 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법인은 75% 지분을 보유한 박상태, 박상준에게 건물 관리를 일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유지 관리 및 수선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법인에서 지출하지 않고 있으며 공유자 중 한명인 박상준과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받고 법인에서는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지분만큼의 건물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금번 김제시에서 보상 협의 요청한 내용은 김제시 요촌동 158-1번지 토지 1,620㎡에 대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1㎡당 감정평가금액 941,000원을 적용하여 총 보상금액이 1,524,420,000원으로 본 법인에 대한 보상 금액은 보유지분 25%인 토지 면적 405㎡에 대한 보상금액이 381,105,000원이 되며, 동 소재지 건물 2,145.43㎡에 대한 보상단가는 각층별로 적용하여 건물 1층과 2층은 180,000원, 3층은 145,000원, 컨테이너 1동 1,000,000원 및 수목 4주 980,000원으로 총 387,317,400원으로 컨테이너 및 수목 4주는 75%지분 소유자의 것으로 보상금액에서 제외하여 본 법인에 대한 보상 금액은 보유지분 25%인 건물 536.3575㎡에 대한 96,334,350원으로 총 보상금액이 477,439,350원이 됩니다.

금회 이사회에서 김제시 요촌동 158-1번지 토지 및 건물을 김제시에 매각하는 것으로 처분 심의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의 처분 허가 신청을 받은 후에 김제시청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후 보상이 완료되면 총 보상금액 477,439,350원에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세무수수료를 납부하고 잔액을 정기 예탁금으로 예치하여 수익용 재산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청탁한 세액 및 주수료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확정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고 공유자 중 한명인 박상준의 지분에 임대계약자와의 분쟁으로 가압류가 있는 상태여서 김제시에서는 75% 공유자가 이를 해결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본 법인 지분에 대한 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보상 협의를 6월 안에 마쳤으면 하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법인 상황을 설명하여 여러 절차상 이는 어렵다고 이야기 해둔 상태입니다.

공유지분자인 박상태, 박상준 측도 김제시에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고자 하는 의사는 확실하여 가압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가압류 해제 및 세입자들과 보상 협의 등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법인에서도 전북교육청의 승인을 얻으면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여야 하므로 처분 승인 신청은 공유자 측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장 : 간사의 설명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달심 : 현재 처분 협의를 하고 있는 해당 건물에서 법인 임대 수입이 있는데 임대 수입과 처분하여 정기예탁금의 이자 수입을 비교하였을때 어느 쪽이 법인에 더 실익인지 궁금합니다.

간사 : 2020학년도에 월 45만원씩 연 540만원의 임대 수입이 있으나 부가가치세 및 재산세 납부에 210만, 격년별도 건물정기점검수수료가 25만원 정도 경비가 지출되어 년도별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수입 300~330만원이 됩니다. 금융기관의 금리가 현저히 낮아지긴 했지만 정기예탁금의 이자수입과 환급되는 법인세 및 법인지방세를 수입 처리하면 수입 금액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상우 : 건물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반 침하로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인도 책임을 면할수 없을 것이며 현재 법인 재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5% 공유지분자도 매각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수입 대비 관리에 따른 지출 경비를 산출했을 때 법인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미친다고 볼 수 없기에 김제시 요촌동 158-1번지 토지 및 건물을

김제시에 매각하여 처분대금에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세무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추후 김제시와 계약이 완료되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세무수수료가 확정되면 최종 금액에 대해 이사회에서 다시 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박영장 : 이상우아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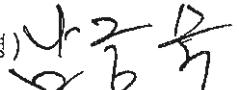
송재득 : 동의에 재청합니다.

정희철 : 이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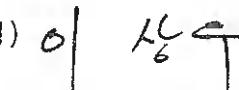
의장 : 참석이사 전원 찬동으로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광장조성)에 편입된 본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인 김제시 요촌동 158-1번지 토지 405㎡를 381,105,000원, 건물 536.3575㎡를 96,334,350원으로 총 477,439,350원에 전라북도 교육청의 승인을 얻어 김제시에 매각하는 것에 동의하며 처분대금 477,439,350원에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세무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정기예탁금으로 예치하여 수익용재산으로 관리하되 추후 김제시와 계약이 완료되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세무수수료가 확정되면 다시 이사회에서 심의하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① 10000711001078  
위 회의의 전말을 기록하고 사실과 틀림없음을 인정 아래 서명 날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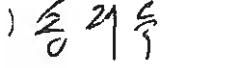
2020년 6월 23일 11시 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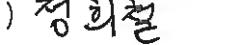
이사장 남궁숙 (서명) 

이사 박영장 (서명) 

이사 이상우 (서명) 

이사 박달심 (서명) 

이사 송재득 (서명) 

이사 정희철 (서명) 

| 기록자 |    |          |
|-----|----|----------|
| 소속  | 직급 | 성명       |
| 만경고 | 6급 | 남궁미 (성명) |

| 원본대조필   |   |
|---|---|
| 법인실장  | 이사장   |
|  |  |